

공해환자로부터 본 일본의 대기오염공해

(재)공해지역재생센타 이사장

모리와키 키미오

[연기 도시 탄생]

명치유신이래, 정부의 정책에 의거하여 기계화에 의한 공장에서의 대량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점차 '공해'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공업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 지역의 주민전체에 피해를 미쳤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매연 문제가 심각화된 것은 오오사카입니다.

18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큰 공장이 점차 지어지고, 오오사카는 공업도시로서 발전해 갔습니다. 그 무렵의 오오사카를 표현하는 것으로 '연기도시'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공해의 확산과 함께,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나타난 것도 오오사카였습니다. 먼저, 도시주변부에 살며,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때문에, 농작물의 수확에 영향이 생겨, 생선을 잡을 수 없는 등의 손해를 입었을 때, 공해의 원인인 공장에 대한 조업중지. 또는 그 이전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격렬히 행동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지방의 유력자, 지주, 상점주 등입니다. 피해가 애매하거나, 공해의 원인이 어느 공장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에의 친정활동을 행했습니다.

개다가 대정기(1912-1925)에는 환경오염과 파괴가 만성화되고, 전문가, 학생, 변호사, 행정담당자, 재계유지를 중심에서 공해반대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운동에 의해, 1932년(쇼와 7)에는, 오오사카부령으로 일본에서 처음인 '매연방지규제'가 발령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931년(쇼와 6)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의 공장 확장, 신설이 잇달았습니다. '낭비절약' '자원애호'의 슬로건 아래, 매연방지운동은 전시체제 중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전쟁전의 국정교과서인 소학교용 국어독본에는, 오오사카는 '연기도시'이고, 그것이 번영의 증거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고도경제성장]과 공해

전쟁과 폐전에 의해, 일본의 공업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1951년 (쇼와 26)의 조선전쟁을 계기로 부흥이 급속히 진행되고, 그것에 동반하여 1950년대의 중반에는, 다시 공해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1960년(쇼와35) 12월, 정부는 국민소득배증계획을 발표, 10년후인 1970년 (쇼와45)에는 국민총생산을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계획은, 4대공업지대를 연결하여 띠모양으로 공업지대를 만들어(태평양벨트지대구상), 효율적으로 공업화를 행하려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총생산은 계획의 1.7배라고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한편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공업지대에는 심각한 공해가 다발하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괴로운 고통

고도경제성장이 초래한 대기오염은 심각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때로는 오염때문에 50m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에, 심각한 호흡기장해 환자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은 SOx(유황산화물)과 NOx(질소산화물)입니다. 사람의 코·입에서 폐까지의 통로는, 세균 바이러스 등이 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섬모로 덮여져 있습니다. SOx나 NOx 등의 자극물은 이 섬모를 파괴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 결과,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체내에 들어가, 심각한 호흡기장해를 발생시킵니다.

이산화질소(NO2)의 연평균가의 추이 (각지의 측정국의 평균, '환경백서' 1996년판에서).

NO2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지만, 자동차교통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개선되기는커녕, 조금씩 악화되는 경향에 있다.

이에 따라 '기관지천식' '만서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성기관지염' 등의 병이 일어났습니다. 태평양연안부분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전국각지에서 이러한 호흡기질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죽기보다 괴롭다'라고 할 정도의 발작에 고통스러워 학교에도, 일하려도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심각화되는 공해에 비해, 공해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제를 요구하는 방법에는,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4대공해재판의 하나로, 1969년(쇼와44)에 제소되었던 '요카시대기오염공해재판'은 그 예입니다.

판서전력(아마가사키)의 배연으로 화창한 날에도 하늘은 막혀버렸다.

[공해피해자의 증언] - 토모에 야마키

실신할 정도의 발작이

우리들은, 부부모두 공해병환자입니다. 이불은 항상 편 채로 있습니다. 밤에는 지팡이 2개를 머리와 가슴부분에 두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구부리고 잡니다. 반듯이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써 15년 이상이나 반듯이 잔 적이 없습니다.

실신할 정도의 발작이 난 적도 있습니다. 새벽녘에 발작이 일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테라모토선생이 뺨을 때리며, '눈을 떠' 하고 소리쳐, 간신히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드니,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쿠시마에 있었을 때는 매월 4회나 5회, 구급차로 히메지마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이웃사람들도 '또 야마카씨네'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출산한 딸이 울며

이제까지 가장 슬펐던 것은, 셋째딸이 아이치현으로 시집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오셔서 도와주세요'라고 부탁받았을 때였습니다.

'힘들어서, 갈수 없어'라고 거절했습니다만, '딴 엄마는 1개월정도 전부터 와서, 돌봐주는데'라고 말하며, 딸이 울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부와 아이 셋이 함께 놀려 간 것은, 아직 아이들이 조그만 했을 때에 도시락을 싸서, 아리마와 미누시에 갔을 때 정도입니다.

한번, 전차 안에서 발작이 일어, 다음 역에서 서둘러 내려, 약을 먹고 진정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무서워서 전차도 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해를 없애고싶은, 자기와 같은 고통을 맛보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나시요도가와공해소송원고단.변호단 뉴스] 1994.10.13 제3호)

겨우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공해반대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에, 1967년(쇼와42)에 '공해대책기본법'이 성립되어, 건강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전체의 오염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기준이해 정해졌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1969년(쇼와44), '공해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카시 시의 일부, 오오사카시 나시요도가와구, 가와사키시의 일부 등이 공해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공해병으로 인정된 건강피해자에 대해, 의료비의 자기부담분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피해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재산적, 정신적인 손실, 위자료 등 생활 전체에 관계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 제도의 성립은, 그때까지 자신은 공해환자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공해지역이고, 대기오염공해가 원인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알리게 되었고, 각지에서 공해환자운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71 ~ 72년에는 공해의 기업책임을 판결한 4대 공해재판의 판결이 이어져, 72년에는 이를바 '무과실책임법'(대기오염방지법 및 수질오탁방지법의 일부개정)에 의해, 공해발생의 원인을 만든 자는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오염자비용부담원칙(PPP)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민사책임에 입각하여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제도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흐름을 얻어, 공해건강 피해보상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공해병인정환자수와 사망자수

1998년 3월 1일로, 새로운 공해병인정환자의 신청은 할 수 없게 되었다.

구 공해지정지역의 피인정환자수

(1997년 12월 말)

확산되는 공해환자의 조직운동

공해환자의 건강피해의 참사와 그것에 수반되는 생활의 고통은, 의료비의 부담만으로 구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해환자와 직접 마주대하는, 의료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료관계자가 공해환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공해환자회'가 전국각지에서 결성되었습니다.

각지의 공해환자회에서는, 공해발생구조와 공해환자를 둘러싼 제도의 학습회와 상담회를 행하면서, 자치단체와 간담회를 갖거나,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갔습니다. 더욱더, 각지의 활동을 교류하고, 각각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여, 각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환경청이나 관계성 청에 청원할 수 있도록, 1973년(쇼와48)에 '전국공해환자회연락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지나 전국규모에서의 활동은, 정부나 자치단체에 의한 건강피해보상제도, 건강회복사업, 공해대책 등의 대처로 이어져 갔습니다.

1972년(쇼와47)의 '요카시대기오염공해재판'의 승소와 각지의 공해환자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도 큰 힘이 되어, 1973년(쇼와48)에 공해건강피해보상법(공건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해병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일정의

생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오염물질의 배출비율에 따라, 전국 각지의 기업에서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해환자의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공해를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애매하게 만드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매년6월, 전국각지의 여러가지 종류의 공해에 의한
피해자단체가 수도동경에 결집하여 집회를 하고 있다.

천식의 책임은 콤비나트에 입지하고 있는 각 회사들의 공동불법행위라고 결론을 내린 요카시판결을 보도하는 신문기사 (1972년7월)

공해대책의 역행은 허락하지 않는다

1960년대부터의 여론의 고조에 따른 압력으로, 기업의 공해대책과 저유황중유의 사용 등을 저감시키도록 하는 대책이 공건법에 의한 부담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진행되어, 유황산화학물을 중심으로 대기오염상황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후반부터는, 공건법의 비용부담자인 재계, 기업으로부터 공건법의 축소, 폐지를 바라는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공해대책의 역행을 막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지의 공해환자회가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1977년(쇼와52)부터 83년에 걸쳐, 치바, 오오사카니시요도가와, 카와사키, 쿠라시키 미주시마 등에서, 공해인정환자로 인정된 지역주민이 대기오염재판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건강피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재판소에서 분명히 함으로써,

공해대책과 공해환자의 건강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해자다라고 인정된 자의 책임으로 행하게 하여, 공해행정의 역행을 막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의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은 공건법을 개정하여, 1988년(쇼와63) 3월로 공해지정지역을 전면해제하고, 공해환자에 대한 판정업무를 중지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항의하는 형태로, 1988년에 아마가사에서, 89년에는 나고야남부지역에서 새로 대기오염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이산화질소(SO₂)의 배출량의 연평균가의 추이(각지의 측정국의 평균,
'환경백서' 1996년판에서).

SO₂는 주로 공장에서 배출된다. 규제제도의 정비에 의해 크게 개선되고 있었던 것을 알수있다.

공해지정지역의 해제에 반대하여 연좌항의를 장기간에 걸쳐 계속했다.

전국공해환자회 연합회는, 약자의 생활을 무시하는 '행정개혁'을 강행하는

임시 행정조사회에 반대하는 항의를 각지에서 펴부었다.

계속늘어나는 공해병환자 -공해지정지역은 해제되었지만-

'대기오염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새로운 공해환자를 낳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견지하면서, 공해지정지역은 해제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그 후에 발생한 공해환자를 구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도 새로 천식등의 환자의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공해지정지역이 해제된 이후, 동경시, 오오사카시 등 12자치단체에서는 독자의 의료비조성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이, 96년 3월 말로 공건법상 인정환자에 육박하는 7만3천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연등에 의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장에서의 유황산화물(SOx), 분진에 의한 오염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자동차, 특히 디젤차의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질소산화물(NOx), 부유입자상물질(SPM) 등에 의한 오염의 심각화에 따른 것입니다.

오오사카시의 경우의 소아천식 환자수(15세미만)의 추이(전국공해변호단 연락회의 27회 총회기념심포지움자료에서).
공해병인정이 중단된 1989년 이후에도 해마다 천식환자수는 증가하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디젤배기가스를 뿜어내는 대형화물자동차가 복적거리는
주공흔재지역의 도로(오오사카시니시요도가와구)

대기오염의 사실은 왜곡할수없다 -원고승소가 이어지는 공해재판-

1988년(쇼와63) 11월, 치바가와사키 철광공해소송에서 원고환자측 승소로 지방재판소 판결이 내려져, 1992년 8월에는, 기업과의 사이에서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오오사카니시요도가와 공해소송의 경우에도, 1991년 3월, 원고환자측 승소로 지방재판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건강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1995년(평성 7) 7월의 니시요도가와판결(2~4차)에서는, 건강피해와 자동차에서 배

출되는 질소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하며, 니시요도가와 구내를 지나는 간선도로의 설치, 관리자인 정부와 한신고속도로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6년(평성 8)에 제소된 동경대기오염재판에서는, 정부, 동경시, 도로공단과 함께 자동차 제조회사를 피고로 '도로공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중에는, 미인정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998년(평성 10) 8월의 가와사키 공해소송재판은, 현재의 대기오염하에서의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해, 건강피해가 생기는 것을 인정하여, 1978년의 공건법의 개정이 후에 발병한 환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이 되었습니다.

NO2와 SPM(부유입자상을질)에 의한 건강피해를 인정하여, 그것이
오늘날에도 공해환자를 냉고 있는 것을 자격한 가와사키공해소송(2~4차)의
지방재판소판결 ([요미우리신문] 1998년 8월5일 석간에서)

처음으로 도로공해에 의한 건강피해를 인정한 오오사카 니시요도가와공해소송의
(2~3차) 지방재판소판결 (1995년 7월)

공해 거리의 재생을 목표로 하여

공해에 의해 고통받아 온 사람들에게는, 공해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함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피해자를 구제시킴과 동시에, '공해병의 고통을 자식과 자손에게 두 번 다시 맛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들의 거리를 공해가 없는, 살기 좋은 곳으로 부활시키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망에 따라, 전국에서 여러 가지의 '거리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오사카니시요도가와구, 아마가사키시, 쿠라시키시의 공해환자들은 '이런 거리가 좋아'라는 '재생플랜'의 제안을 표명한 일러스트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산책길, 시민농원, 강을 건너는 배, 번잡스런 상점가 등, 지역의 특징을 살린 아이디어로, 병과 싸우면서 오랫동안 살아 온 거리에의 생각과,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는 건강하게 하고 싶다라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쿠라사키공해환자와 가족회가 지역재생에의 생각과 제안을 알기쉽게
일러스트도로 한 것 (1995년 11월)

니시요도가와 공해환자와 가족회의 구조는, 이것들 '거리 만들기' 활동에 있어서, 선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니시요도가와 공해재판의 피고기업에 대해 '거리 만들기'를 요구하는 '니시요도가와재생플랜'를 만들어, 1991년(평성 3)부터 6회에 걸쳐, 주민과 기업, 행정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1995년(평성 7) 3월, 니시요도가와 공해재판은 기업과의 사이에서 화해가 성립, 그 해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1996년(평성 8) 9월에 재생플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재단법인 공해지역재생센타(파란하늘 재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어 1998년(평성 10) 7월, 손해배상의 철회와 상환에 국·공단과의 사이에도 화해가 성립, 니시요도가와 지역의 도로환경의 개선과, 지역의 재생에 서로 협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도로공해대책을 서로 협력하면서 추진해갈 것을 확인하며

화해한 오오사카니시요도가와 공해소송

([마이니치신문] 1998년 7월 30일 조간에서)

* 공해 Q&A *

대기오염공해 Q&A

Q1>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에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납니까?

또, 어떻게 해서 공해병으로 인정해 온 것일까요?

공장이 많이 입지하는 지역에서, 눈이 따끔따끔하다,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등, 여러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심한 천식 발작으로 사망하는 분이 나오는 등, 심각한 증상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원인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킵시다'라는 주민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호소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에서는 '공장의 연기만이 원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고, 기업은 '일본의 번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피해를 직접 경험한 의료관계자와 연구자들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종류의 병이 발생하기 쉬운가를 명확히 해 잤습니다. 이러한 주민과 연구자들의 오랜세월에 걸친 착실한 활동이 결실을 맺어, 공해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2> 대기오염의 공해환자의 인정은, 어떤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공해병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특이성질환'이고, 미나마타 병과 이타이아타이병 등과 같이,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과의 인과관계가 뚜렷이 보이는 병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원인물질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병은 '비특이성질환'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기관지천식 등 호흡기계의 병은, 대기오염이외의 원인에도 관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는, 그 질환이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비특이성질환'이라 해도 공해병으로 간주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제를 위한 전국적 제도인 공해건강회복보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환자를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1) 대기오염이 두드러지며, 기관지천식 등이 다발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살고 있거나, 혹은 일하고 있을 것.
- (2) 대기오염물질과의 인과관계가 역학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다음의 폐색성의 만성호흡기질환일 것.

:기관지천식,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폐기종 및 이로 인한 합병증.

Q3> 공해 환자회등의 환자의 자주적인 단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온 것일까요?

공해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공해병이라고 자각하고, 신분을 밝히고 단결해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선, 호흡기질환에 의한 발작 등의 증상은, 주로 한밤중이나 새벽녘 등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언뜻 보기에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보통사람처럼 일을 할 수 없거나, 학교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으름을 피운다는 등 편견이 늘 따라 다녔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에 대해 폐를 끼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업도시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환자회 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거리의 번영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경우도 많았던 것입니다.

덧붙여, 환자에 대한 보상비에 세금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오해에 의한 편견도 생겨났습니다. 실제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불하는 각출금에 의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 중에서 환자가 스스로를 공해병으로 자각하고, 운동에 나설 수가 있었던 것

은

- (1) 많은 사람들에 의한, 공해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
- (2) 의사나 과학자에 의해, 공해와 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지고, 알기 쉽게 설명되었던 것.
- (3) 피해보상의 투쟁은, 헌법(건강하게 문화적으로 살 권리)에 의거한 정당한 투쟁이다라는, 변호사등의 법률전문가의 협력이 있었던 것.
- (4) 4대공해재판 등, 가해책임을 명확히 해 온 것,

등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가사키시(효고현)에서는, 자신이 공해병환자인 주부가, 지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격려를 받아, 꾸준히 환자의 집을 방문하고 다니며, 환자단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견실한 운동 중에, 환자회는 만들어졌습니다.

이윽고 공해환자 운동은 보상제도를 쟁취하여, 제도에 의해 공해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환자자신도 안심하고 스스로를 공해병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부 측도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환자측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의 존재를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공해환자의 보상제도는, 환자회가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넓혔습니다.

Q4> 공해환자회는, 환자에게 있어, 어떤 장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공해환자회는 2가지의 커다란 역할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해를 없애고, 공해환자의 구제제도를 지키며, 확충하는 투쟁을 단결하여 추진해 가는 운동체로서의 역할입니다.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을 만드는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전국공해환자회 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전국적인 연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전국조직의 결성은, 각지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한편, 정부와 자치체에 대해 통일된 요구를 행하고, 그 실현을 쟁취해 가는 등, 운동을 추진하는데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제제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활용해가는 것과 함께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 단체로서의 역할입니다. 공해환자의 구제제도의 구조는 복잡하여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 절차는 매우 까다로운 것입니다. 환자회에서는 제도에 대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연구하여 환자끼리 서로 도와왔습니다. 또, 천식아동을 위한 캠프나 전지요양을 비롯하여 환자의 요양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5> 공해환자들은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처럼 오랫동안 강한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이러한 피로움을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맛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절실한 바람이 투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해병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해를 없애는 운동에도 선두에 나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서로 격려해 나갈 수 있는 환자회를 만든 것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 시민의 헌신적인 협력이 있었습니다. 법률가, 의사, 의학자가 담당한 역할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시민에게는 지역의 교육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 조합, 소비단체, 환경단체등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자치체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공해반대나 피해자의 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의 고조를 배경으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서서 공해 발생원인이 되는 기업의 고발이나 공해병환자의 구제사업이나 건강회복을 위한 사업에 정부보다 앞서서 몰두해 왔습니다.

넷째로, 공해 건강피해 보상제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라고는 하지만 생활비가 보장되어 운동을 유지하는 금전적인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Q6>변호사, 법률가는 어떤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까?

변호사는 스스로 활동하기 곤란한 환자를 대신해서 환자의 조직화를 돕고, 운동을 추진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등, 공해환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공해환자를 구제함과 함께 제도의 개선등에 큰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 헌신적인 활동의 배경에는 우선, 일본의 변호법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 1조는, "변호사는 정의를 위해 활동할 것"을 의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뢰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미의 변호사제도와의 큰 차이입니다. 이에 의거하여, 변호사회는 사회정의를 위한 대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변호사는, 개인경영의 소규모 사무실의 경우가 많고, 스스로의 재량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활동을 행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에게 있어서도, 공해환자와 만나서, 그 생활실태를 눈으로 직접 대하는 가운데, 사회적 정의를 지키겠다라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단련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Q7>의료관계자는 어떠한 역할을 맡았던 것일까요?

공해환자에게 있어서, 가까이 있으면서 헌신적으로 지역의료에 몰두하는 병원. 진료소의 역할은 빼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헌신적인 개업의나, 주민 스스로가 출자해서 완성시킨 의료기관 등은 공해피해의 실태를 고발하기도하고, 공해환자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또, 의사집단인 보험의협회나 의사회는, 피해자 구제제도의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오사카시 니시요도가와구의 의사회는, 자치단체나 정부에 있어서의 보상제도의 창설에 전력을 다해, 전국에서 최초로 공해의료센타를 창설했습니다.

의료관계자가 모든 정성을 쏟았던 배경에는, 전국민보험제도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 주민은 의료기관에 관계되는 경우의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공해환자에의 보상제도가 갖추어 짐에 따라, 공해병에 관계된 의료비는 무료로 되어, 환자의 치료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8>과학자가 한 역할은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기오염공해문제는, 산업정책이나 지역개발, 도시계획, 환경기술, 기상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하게 얹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해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가 해명, 대책에는 여러분야의 과학자에 의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해피해의 현실에 입각한 과학자들의 대처는 법정 등을 통해서, 공해피해의 원인 규명과 공해대책에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자에 의한 공해 연구가 진전되어, 과학자와 주민, 피해자의 교류를 통해, 1979년(쇼와54년)에는 "제 1회 일본 환경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후 발족된 일본환경회의(JEC)는 일본의 공해, 환경문제에 관련된 과학자나 주민, 피해자의 협력에 의해, 그때 그때의 공해,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Q9>지방자체는 어떠한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지방자체는 공해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대립과 연대를 되풀이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공해환자의 생활을 원조해왔습니다.

각지의 공해환자단체는 지차체 민주화의 주민 운동에 참가해, 환자의 요구를 실현해 가는 방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던 1960년대 후반에는 대도시부의 수장선거에 주민단체후보가 차례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탄생한 민주적 지차체가 공해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정부에 앞서서, 공해환자의 구제제도를 창설하여 전국적인 제도실현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마가와사키시, 쿠라시키시, 카와사키시등에서는 기업이 각출한 자금을 기반으로 공해환자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전

지 요양사업도 행했습니다.

당시,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등의 산업정책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시요도가와시 공해 특별기동대"를 조직해 공해의 발생원의 조사를 행해서, 악질기업에 대해 지도, 권고를 한 오오사카시나, 지자체직원의 노동조합 전국집회에서, 공해문제를 고발한 육카이치시등, 지방지자체에 있어서의 공해대책의 전진에는 지자체에서 일하는 직원의 궁지있고 헌신적인 대처가 있었습니다.

Q10>공해건강피해 보상제도는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 것일까요?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은 1973(쇼와48)년에 성립되어, 이듬해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기오염공해병은 한사람 한사람의 환자에 대해 본 경우, 원인물질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도에서는 선행되어 실시되어지고 있던 지방지자체의 구제제도를 참고로 아래와 같은 환자를 인정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 일정이상의 대기오염이 생겨 그 영향으로 인해 질환이 다발하고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제1종지역)

2. 제 1 종 지역에 일정기간이상 살고 있다거나, 통근하고 있어 만성 폐색성호흡기 질환(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천식성 기관지염, 폐기종 및 그것들의 합병증)의 중 하나에 걸려있는 자를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병환자로서 인정한다.

3. 인정환자에는

1.요양비, 2.장해보상비, 3.유족보상비, 4.유조보상일시금, 5.아동보상수당, 6.요양수당, 7.상제비의 7종류의 급부가 실행된다. 또한, 장해보상비는 노동재해보상비등과 같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8할을 기초로 장해의 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4. 재원은 오염자전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1.급부의 8할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유황산화물의 배출량에 따른 오염자부하량부과금을 징수, 2.나머지 2할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으로써 자동차동량세로부터 충당한다.

이 제도에 의해 동피해환자의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해자인 사업자는 부과금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게 되어, 공해방지기술의 개발이 발달한 경우도 있고, 유황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은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987(쇼와62)년에 공건법을 개정, "공해건강피해보상예방법"이라고 명칭을 바꿔, 다음해88년 3월로 제 1 종 지정 지역을 해제, 그후의 새로운 공해환자의 인정을 중단했습니다.

Q11>공해건강피해보상예방법은 어떤 특징이 있었던 것일까 ?

1987(쇼와62)년에 성립한 공해건강피해보상예방법은 공해환자에 대해 보상을 중심으로 한 제도에서, 건강피해의 예방을 포함한 제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1. 사람의 건강에 주목하여, 건강의 확보,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 2. 환경 그 자체에 주목하여, 환경자체를 건강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가는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아래 도표와 같이 사업의 재원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각출금과, 정부로부터의 재정상의 출자금에 의해 마련된 공해건강피해보상예방협회의 기금의 운용이익에 따라 조달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공해환자의 바람이 제도로써 현실화 된 것이지만, 공해환자의 신규구제를 중단한 "담보"로 써는 대체의 내용도 재원의 규모도 너무나도 불충분하고, 계속 늘어나는 천식환자, 열악한 환경 등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표

대기오염에 관한 공해반대주민운동과 행정의 움직임

1949(S24) 8.13 (동경시)공장공해방지조례 (8.15시행)

1954(S29) 4.14 개정'오오사카부사업장공해방지조례'공포.실행

1962(S37) 6. 2 '매연 배출의 규제등에 관한법률'공포 (12. 1시행)

1963(S38) 三島.沼 콤비나트건설반대운동

1967(S42) 9. 1 四日시공해소송제소

8. 3 '공해대책기본법'공포.실행

1968(S43) 6. 10 '대기오염방지법'공포 (12. 1시행)

1969(S44) 11.26-27 공해피해자전국대회개최

2.12 '유황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준' 각의 결정

7. 5 초의 '공해백서'발표

12.15 '공해에 따른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공포 (70. 2. 1 시행)

1970(S45) 11.24-12.18 공해관련 15법안성립 (공해국회)

1971(S46) 7. 1 환경청발족

1972(S47) 1. 7 공해재판변호단연락회의결성

6. 22 '대기오염방지법 및 수질오탁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무과실책임법)' 공포 (10. 1 시행)

7. 24 四日市 공해소송원고승소판결
 6. 5-16 UN인간환경회의(스톡홀름)의 개최, 인간환경선언체택
 10. 5 환경청, 자동차배기가스량의 허용한도의 설정방침 (일본판마스키
 법) 고시
1973(S48) 12.17 多奈川화력발전소공해소송제소
 10. 5 '공해건강피해보상법' 공포 ('74.9.1 시행)
 11.23 전국공해환자회 연락회결성
1975(S50) 5.25 千葉川철소소제1차제소
1976(S51) 6. 7 제1회전국공해피해자총행동의 날
1978(S53) 4.20 西淀川공해소송제1차제소
 7.11 환경청, 이산화질소의 환경신기준의 고시
1979(S54) 6. 9 일본환경회의결성
1981(S56) 5.17 전국공해환자회 연합회 결성
1982(S57) 3.18 川崎공해소송제1차제소
1983(S58) 11. 9 倉敷공해소소제1차제소
 3.14 임시행정조사회, 공해건강피해보상법재검토의 답신
1986(S61) 10.30 중앙공해대책심의회, 공해지정지역해제의 답신
**1987(S62) 9.26 '공해건강피해보상예방법' (제1종공해지정지역 전면해제, 신규인
 정의 중지) 공포 ('88.3.1 시행)**
1988(S63) 12.26 尼崎공해소송제1차제소
1989(H1) 3.31 名古屋남부공해소송제1차제소
1990(H2) 12. 공해지구환경문제간담회발족
1991(H3) 3.21 '西淀川재생플랜' 발표심포지움
1992(H4) 8.10 千葉川철공해소송, 기업과화해성립
 6. 3-14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UNCED)가 브라질에서 개최
 6. 3 '(약정)자동차NOx법' (12.1 시행)
1993(H5) 11.19 '환경기본법' 공포.시행
1995(H7) 3. 2 西淀川공해소송, 기업과화해성립
1996(H8) 5. 31 동경공해소송제1차제소
 9.11 (재)공해지역재생센타설립
 12.25 川崎공해소송, 기업과 화해
 12.26 倉敷공해소송, 기업과 화해
1997(H9) 12. 1-10 지구온난화방지 쿠토회의
1998(H10) 7. 29 西淀川공해소송, 정부,
 한신고속도로공단과 화해성립
 8. 5 川崎공해소송 (2~3차/피고 : 정부, 도로공단),
 원고승소의 지방재판소판결

전국공해환자회 연합에 의한 해외와의 공해경험교류 (1990~97년)

- 1990년 4월 동남아시아환경조사 공해유출감시일본법률가위원회에 의한 자카르타
만의 수질오탁현상시찰
- 1991년 12월 아시아.오세아니아환경회의 타이에서 대기오염의 간이측정을 실시
파리국제회의 프랑스정부가 각국의 NGO를 초대하여 개최
- 1992년 3월 파란하늘의 날 -西淀川에 타이와 타이에서는 공해피해자와 활동가가,
한국에서는 전문가가 내일 한국의 관계자를 초청
- 6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브라질.리오데자네이로에서 지구 주요
선진국수뇌회의
UNCED
- 11월 비치트박사(타이)가 내일 제 21회 西淀川환자회 총회에 비치트박사
(현 방콕지사)가 참가
- 1993년 3월 아시아. 오세아니아 환경회의(서울) 서울에서 NOX의 간역측정
- 1994년 1월 대만의 공해현장 시찰 대만환경보건연맹과 교류. 금산지구, 대북시, 고옹
시 시찰등
8월 한국의 공해현장 시찰 서울에서 NOX의 간역측정. 한국환경운동연합
과 간담. 울산, 은산 콤비나트시찰
- 11월 아시아환경회의(교오토)
아시아공해피해자교류의 모임 한국, 대만, 타이의 공해피해자, 환경단체의
멤버를 초청하고, 일본공해피해자, (오오사카 西淀川구) 운동단체, 관계
자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 1996년 2월 타이와 대만의 공해현장시찰 법률, 의료제도, 역학조사등의 테마로 대
만및 타이에서 관계자와 의견교환회.
대사공업지구(대만), 마프타프트공업지역(타이)등을 시찰
- 1997년 4월 한국에서 일한공동 심포지움 수우병피해자의회, 니崎공해환자와 가족회
의 멤버를 중심으로 참가. 여천공업단지의 시찰과 주변주민과 간담.
"여천공단환경문제일한공동심포지움"에 양국의 공해경험, 현황등을 보고
- 12월 타이의 환경NGO를 초청하고, 오오사카의 연도대책, 대기오염정화대책,
水島콤비나트, 환경측정구등의 시찰.
일본의 현장시찰, 간담회 니崎시, 倉敷시, 동경도와 간담. 일본환경회의
고베대회에 참가, 타이의 대기 오염의 현황을 보고